

1998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附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教育部

日 時 1998年10月31日(土)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답변서)

○教育部長官 李海瓚

(朴承國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임시이사제도로는 사학분규를 끝내지 못하고, 학생·교수들에게 분규해결을 맡겨서도 안될 것이므로, 교육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 변)

○사학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분규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고, 임시이사 선임에 의한 정상화 방안은 동 방안으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택하는 정책수단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사학분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전횡과 사학구성원간의 신뢰감 및 참여 등의 부족이라고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를 개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의)

○4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길병원에서 경원대 학교를 인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지?

(답 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성되고, 법인은 학교경영자의 개인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경영자의 개인재산이 많아 법인에 계속 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자 개인은 구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원대의 경우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질 의)

○서원대 사태에 있어서 교육부 의혹이 있는데?

-재정능력이 없는 최완배 이사장을 승인한 이유는?

-누구의 권유인지, 교육부 자체의 권유인지 밝혀달라?

-이사장 취임 및 기채 승인후 문제가 발생하니,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이유는?

(답 변)

○최완배 이사장은 서원학원의 학내구성원 대표(중·고교대표 5명, 평교협회장 등 5명, 직원노조위원장 등 3명, 총 학생회장 등 3명)로 연합구성된 “경영자영입대책추진위원회”에서 '96.4.27 인수로 선정되어 법인에 추천되고

○동 법인이사회는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의 선정결과와 각급 학교장의 경영자선정보고서를 수용하여 '96.4.30 이사회에서 최완배씨 등을 정이사로 선정하여 '96.5.7 교육부에 임원 취·해임승인 신청하였으며

○우리 부에서는 동 이사회와 학내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최완배씨 등을 동 법인의 정이사로 취임승인하였습니다.

○동 법인의 문제내용이 100여억원 이상의 부채현존, 이사장의 출연약속 미이행 등으로 법규정이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운용 및 학교경영방식 개선, 신뢰감회복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 의)

○서원대 사태에 있어서 교육부의 의혹이 있는

데,
- 학교재산을 담보로 기채승인을 해준 이유는?
는?

(답 변)

□기채허가와 관련하여 우선, 기채허가 경위, 기채허가 사유, 기채허가 변경허가 내용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허가 경위

○최완배 이사장 취임('97.6)후 자체적인 실적 결과, 부채규모는 248억원(원금 175억원, 이자73억원)으로 이는 교육부 허가금액 31억원, 세금등 미허가 217억원입니다.

※허가를 받은 기채(이자포함) : 3,119백만원 (충북은행 1,694백만원, 충북투금 1,425백만원)

○'97.3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고자 신청한 기채허가(60억원)에 대하여 이사장 출연실적 저조 및 재산출연계획 이행촉구를 요청하면서 반려조치('97.4.7)하였습니다.

○'97.9월 시설자금(10억원) 및 운영자금(부채상환 50억원)에 사용하고자 60억원을 기채하고, 상환재원은 이사장 출연금, 그리고 무담보 신용대출 하기로 신청한 기채허가에 대하여 허가조치('97.9.29)하였습니다

◇기채허가 사유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상환재원이 이사장 출연금이어서 이는 결과적으로 부채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의 학생등록금 압류를 다소라도 진정시킬수 있고, 이사장 출연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채허가 행위는 기속채량행위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대로 허가하여 주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 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대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총액은 3,669,700천원이고, 상환액은 3,169,700천원(이사장 출연)으로 '98.10.31 현재 잔액은 5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후 기채상한액을 60억원에서 37억원으로 변경허가하여 법인과 은행에 통보함('98.6.15)

◇기채허가 변경 내용 및 사유

○'97.11.4 : 기채허가 사항 변경신청 (1차)

-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40억원 : 한일은행→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정기예금 등) 담보 제공

-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압류가 예상되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97.11.14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1차)

○'98. 1.23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신청 (2차)

-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60억원 전부 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담보 추가 제공

-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의 재산공개 명시판결을 받아 경매조치를 할 움직임이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98. 2. 4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2차)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사유

○법인의 부채와 관련, 기채처(주택은행)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담보코자 하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이 압류되는 상황을 감안, 학교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변경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처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부채와 관련한 채권자들은 동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불가 (후순위)

□앞으로는 기채허가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서원학원과 같은 기채로 인한 물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기채도 가급적 기한에 관계없이 조속히 상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질 의)

○서원대 사태에 있어서 교육부의 의혹이 있는데,
- 등록금 압류에 대한 현지실사후 불법사실을 눈감아 주고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

(답 변)

○서원대의 문제를 제기한 평교협측에서는 시종일관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우리 부의 현지조사('98.5.20부터 29일까지)시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 사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 법인측에서는 업무방해 및 학내소요 주동을 이유로 파면 및 해임조치를 취하는 등 양측간에는 타협 보다는 자기 주장 관철을 위한 극한적 대립양태로 상호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어 이해와 협력의 모색이 쉽지 아니합니다.
-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이사장 퇴진 등 평교협이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경고」 또는 「임원승인 취소」두가지 방법이어서 어느쪽을 선택하든 평교협측과 대학측의 기대가 상반되어 상호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어 현시점에서의 조치는 학원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서원대의 사태에 대하여는 '92년도 임시이사 체제이후 동 대학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타율보다는 구성원간의 대립·갈등을 씻고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黃祐呂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경원대에 대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신입이사진에 대하여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98.10.26부터 10월28일까지 경원학원 및 경원대, 경원전문대의 재정운영상태 및 이사진 교체를 위하여 '98.9.25개최한 이사회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동 법인 및 학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검찰의 조치내용에 따라 특별감사 실시여부를 검토 하겠으며,
- 신입이사진의 학교경영능력 등을 확인·조사후 취임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학교와 법인회계가 중첩될 경우, 법인으로 인한 등록금 압류 등을 막기 위하여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할 수는 없는가?

(답 변)

-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학교회계중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는 校費會計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 우리 부에서는 법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록금 등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자금이 압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 의)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평소에는 자율에 힘쓰고, 문제발생시에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제발생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해결방안·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 칙

- 문제당사자를 포함한 학내구성원간의 자율 해결 유도
- 문제해결에 있어 합법성 존중
- 빠른 해결로 안정적 면학분위기 조성

－문제해결 방안

- 엄정한 법집행, 문제소지 법률개정, 문제 당사자간의 중재 및 조정
- 법인 및 학교운영의 공개 및 학내구성원의 참여 유도
- 행·재정 제재, 임시이사 선임 등

－단계별 지도 대책

<당사자 해결단계>

- 1단계(자율해결촉구)
 - －총학장 책임하에 각 대학이 자체 해결토록 촉구함
- 2단계(조장적 중재)
 -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직접 중재에 나섬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함

<행정적 조치단계>

- 3단계(행정적 지도)
 - －한시적으로 계고장 발송 등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종합 감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함
- 4단계(행정적 조치)
 - －총장해임 요구, 임시이사선임 등 행·재

정적 조치를 취함

(질 의)
○서원대 최완배 이사장 취임후 출연금액 등에 대한 회계법인의 철저한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답 변)
- 최완배 이사장의 취임후 출연금액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도 자체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최 이사장 본인이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부에서는 '97년도 및 '98년도 결산에 대한 외부 공인회계기관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 의)
○김준철씨가 임의처분한 재산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답 변)
-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재산환수가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재산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환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질 의)
○임시이사 파견기준은?

- (답 변)
-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은 사립학교법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의 임시이사의 선임은 임원선임의 제한, 결격사유, 겸직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1조 내지 제23조가 그 기준이 되나,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대학의 문제해결 가능성과 학내구성원 및 지역여론 등을 감안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李相賢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교육부는 청주대학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

(답 변)

- 청석학원은 우리 부의 재산환수지시를 이행치 못하여 임시이사선임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조건을 한정하고 있고
- 현 이사진의 경우 재산처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법인이 환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견해가 상이하며
- 임시이사가 선임되어도 소송패소로 재산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임시이사 선임의 실익이 없으므로
- 우리 부에서는 동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구성 등을 개방하고 학내구성원의 여론이 법인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재산환수문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서원대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이 인수계획서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였는데, 향후 문제학교법인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서원학원의 최완배 이사장은 동 법인의 학내구성원 대표(18명)로 구성된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에 인수계획서를 제출했고
 - 동 법인은 학내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최완배씨 등을 정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우리 부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취임 승인하였습니다.
 - 문제학교법인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학내구성원의 의사는 물론 신임이사진의 학교경영능력을 검증한 후 취임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 의)
○교육부는 서원대학교의 분규상태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서원대학교의 문제는 학내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해결 될 수 있으므로 학내구성원들이 자율해결토록 촉구하되
 - 우리 부에서는 최완배 이사장이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인수계획서에 따른 출연금의 출연 및 부채상환을 재촉할 계획이며

○출연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횡령사건을 인지한 시기와 교육부에서 취한 조치 및 이사장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답 변)
○'98년7월초 경원전문대학 교수들이 학교법인에서 학교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부서에서 현지조사후 전문대학 학교예산 132억원 등 경원학원에서 218억원의 기업어음을 구입했는데 동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 내막을 알았습니다.
○교수들의 진정후 즉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였고, 조사후 모든 사학에 대해 자금을 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원대 등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안정적이고 투명성있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향후 자금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원대의 경우 유출된 218억원 환수와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진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능력있는 이사진을 구성하여 안정된 학교운영을 기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더욱 정밀히 조사를 하여 응분의 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 의)
○사학재단의 이양시 횡령재단이 물러나고 공정한 이사진에 의하여 공정하게 후임재단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 변)
○사립대학이 공금횡령 등으로 인한 분규발생으로 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학생교육 및 교수연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연구 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공정한 이사진에 의하여 후임재단이 선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박정규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유는?

(답 변)
○청주대학교 박정규 교수의 재임용 탈락건에 대하여 우리 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대학교는 '98.9.1일자 재임용대상 교원 25명 중 24명을 재임용하고 박정규 교수 1명을 탈락시켰으며,
○박정규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학교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해교행위를 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 의)
○서원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밝혀진 비리사실에 대하여 교육부가 처분을 유보한 이유는?

(답 변)
○서원대의 문제를 제기한 평교협측에서는 시종일관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우리 부의 현지조사('98.5.20부터 29일까지)시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사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법인측에서는 업무방해 및 학내소요 주동을 이유로 파면 및 해임조치를 취하는 등 양측간에는 타협 보다는 자기 주장 관철을 위한 극한적 대립양태로 상호간 불신의 골을 깊게하고 있어 이해와 협력의 모색이 쉽지 아니합니다.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이사장 퇴진 등 평교협 요구사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경고」 또는 「임원승인 취소」 두가지 방법뿐이어서 어느쪽을 선택하든 평교협측과 대학측의 기대가 상반되어 상호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어 현시점에서의 조치는 학원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원대의 사태에 대하여는 '92년도 임시이사 체제이후 동 대학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타율보다는 구성원간에 대립의 갈등을 씻고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질 의)
○교육부가 서원대학교 사태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이유는? 그리고 교육부의 자율해결방안은 현실성 없는 해결방

안이 아닌지?

(답 변)

-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92.8월 강인호 전이사장의 200억원의 부채발생후 해외도피로 '92.12.5 부터 '96.5.14 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다가 현 최완배 이사장이 '96.5.15 취임하였으며
- 동 법인의 문제는 100여억원 이상의 부채현존, 이사장의 출연약속 미이행, 교수 및 학생들의 지나친 학교경영권 간여, 학내구성원간의 신뢰 부족 등으로, 법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부족 등에 기인한 바 크므로, 신뢰회복을 통한 학내구성원들의 자율해결이 사후 후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우리 부에서는 동 법인의 자율해결을 위하여 최완배 이사장에게 동인이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인수계획서에 따른 출연금의 출연 및 부채상환을 촉구하고, 출연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서원대학교의 이사장취임승인 및 사태해결과 관련하여 유착 및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답 변)

- 최완배 이사장은 서원학원의 학내구성원 대표(중·고교대표 5명, 평교협회장 등 5명, 직원노조위원장 등 3명, 총 학생회장 등 3명)로 연합구성된 “경영자영입대책추진위원회”에서 '96.4.27 인수로 선정되어 법인에 추천되고
- 동 법인이사회는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의 선정결과와 각급 학교장의 경영자선정보고서를 수용하여 '96.4.30 이사회에서 동인 등을 정이사로 선정하여 '96.5.7 교육부에 임원 취·해임승인 신청하였으며
- 우리 부에서는 동 이사회와 학내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최완배씨 등을 동 법인의 정이사로 취임승인하였습니다.
- 동 법인의 문제내용 또한 100여억원 이상의 부채현존, 이사장의 출연약속 미이행, 교수 및 학생들의 지나친 학교경영권 간여, 학내구성원간의 신뢰 부족 등으로 법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학내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율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므로 교육부의 유착 및 비리의혹이 제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질 의)

○ 서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기채허가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데?

(답 변)

□ 기채허가와 관련하여 우선, 기채허가 경위, 기채허가 사유, 기채허가 변경허가 내용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채허가 경위

○ 최완배 이사장 취임('97.6)후 자체적인 실사결과, 부채규모는 248억원(원금 175억원, 이자73억원)으로 이는 교육부 허가금액 31억원, 세금등 미허가 217억원입니다.

※ 허가를 받은 기채(이자포함) : 3,119백만원
(충북은행 1,694백만원, 충북투금 1,425백만원)

○ '97.3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고자 신청한 기채허가(60억원)에 대하여 이사장출연실적 저조 및 재산출연계획 이행추구를 요청하면서 반려조치('97.4.7)하였습니다.

○ '97.9월 시설자금(10억원) 및 운영자금(부채상환 50억원)에 사용하고자 60억원을 기채하고, 상환재원은 이사장출연금, 그리고 무담보 신용대출하기로 신청한 기채허가에 대하여 허가조치('97.9.29) 하였습니다

◇ 기채허가 사유

○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상환재원이 이사장출연금이어서 이는 결과적으로 부채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의 학생등록금 압류를 다소라도 진정시킬 수 있고, 이사장출연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채허가 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대로 허가하여 주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 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대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 기채총액은 3,669,700천원이고, 상환액은 3,169,700천원(이사장출연)으로 '98.10.31 현재 잔액은 5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현지조사후 기채상한액을 60억원에서 37억원으로 변경허가하여 법인과 은행에 통보함('98.6.15)

◇ 기채허가 변경 내용 및 사유

○ '97.11. 4 : 기채허가 사항 변경신청 (1차)

-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40억원 : 한일은행 → 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정기예금 등) 담보 제공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압류가 예상되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97.11.14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1차)

○'98. 1.23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신청 (2차)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60억원 전부 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담보 추가 제공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의 재산공개 명시판결을 받아 경매조치를 할 움직임이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98. 2. 4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2차)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사유

○법인의 부채와 관련, 기채처(주택은행)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담보코자 하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이 압류되는 상황을 감안, 학교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변경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처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부채와 관련한 채권자들은 동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불가 (후순위)

□앞으로는 기채허가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서원학원과 같은 기채로 인한 물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기채도 가급적 기한에 관계없이 조속히 상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질 의)

○교육부의 서원대학교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시 유착의혹이 제기되는데?

(답 변)

○지난 5월 현지조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평교협측과 대학측간에 상반된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로 동 조사기간에 비리의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의 능률을 위하여 공개는 하지 않았으나, 조사가 지연되는 사유

(자료의 제출지연, 조사방향과 맞는 자료작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평교협 의견청취 등 조사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평교협측에 자세히 설명드릴바 있습니다. 조사기간동안에 대학측의 보직자로부터 평교협측의 의견은 들어주면서 보직자의 면담은 일체 들어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유출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학생대표와 직원 앞에서 서류를 봉하고 이를 인근 파출소에서 보관케 하였으며, 익일 다시 학생대표와 직원이 함께 찾아오면 개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법인, 대학, 평교협, 학생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착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질 의)

최원영 이사장은 218억원을 유용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답 변)

○7월초 경원전문대학 교수들이 전문대학의 자금 130억원을 이사장이 유용했다는 진정 후 즉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학교법인, 경원대학교 및 경원전문대학 자금에서 구입한 기업어음 218억원이 부도났다는 사실과 이사장등 관련자들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더욱 정밀히 조사를 하여 응분의 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원대의 경우 유출된 218억원의 환수와 이사장을 포함한 현이사진 등 관련자 전원을 퇴진시키고 능력있는 이사진을 구성하여 안정된 학교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질 의)

○경원학원의 후임이사진으로 선임된 길병원에 대해 심도있는 종합판단 후 이사취임을 승인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경원학원 최원영 이사장이 학교자금으로 218억

의 예음그룹(회장 최원영)의 약속어음을 매입했으나 부도로 환수가 불가능해졌고

○동 법인에서는 '98.9.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원영 이사장 등 9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이길여 등 9명을 신입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법인 및 학교의 경영공백상태의 조속한 해소와 안정적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입이사진의 경영능력 및 정상화가능성과 학내구성원의 여론 등을 검토하여 이사취임승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金貞淑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현 청와대 이원우 비서관이 '95년 청주대 이사가 되었는데, 공무원이 사립대 이사가 될 수 있는가?

(답 변)

○이원우 비서관은 동인이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시 우리 부가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로 추천하였으며,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청주대 이사 역임이후 대학행정지원국장 재임시 최완배 이사장 취임승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최완배 이사장은 이원우 비서관이 대학교육지원국장으로 재임시 취임승인되었으나, 동인은 서원학원의 학내구성원 대표(중·고교대표 5명, 평교협회장 등 5명, 직원노조위원장 등 3명, 총학생회장 등 3명)로 연합구성된 "경영자영입대책추진위원회"에서 '96.4.27 인수자로 선정되어 법인에 추천되고

○동 법인이사회는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의 선정결과와 각급 학교장의 경영자선정보고서를 수용하여 '96.4.30 이사회에서 동인 등을 정이사로 선정하여 '96.5.7 교육부에 임원취·해임승인 신청하였으며

○우리 부에서는 동 이사회와 학내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최완배씨 등을 동 법인의 정이사로 취임승인하였습니다.

(질 의)

○재단과 학생, 교수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사학분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장관은 사학의 자율적인 해결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까?

(답 변)

○우리 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여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발생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해결방안·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칙

- 문제당사자를 포함한 학내구성원간의 자율 해결 유도
- 문제해결에 있어 합법성 존중
- 빠른 해결로 안정적 면학분위기 조성

－문제해결 방안

- 엄정한 법집행, 문제소지 법률 개정, 문제 당사자간의 중재 및 조정
- 법인 및 학교운영의 공개 및 학내구성원의 참여 유도
- 행·재정 제재, 임시이사 선임 등

－단계별 지도 대책

<당사자 해결단계>

- 1단계(자율해결촉구)
 - －총·학장 책임하에 각 대학이 자체 해결토록 촉구함
- 2단계(조장적 중재)
 -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직접 중재에 나섬으로써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토록 지원함

<행정적 조치단계>

- 3단계(행정적 지도)
 - －한시적으로 계고장 발송 등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함
- 4단계(행정적 조치)
 - －총장해임 요구, 임시이사선임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함

(질 의)

○청주대, 경원대, 서원대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법인 임원들

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관의 말처럼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재단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입니까?

(답 변)

- 청주대, 경원대, 서원대에 법적인 하자가 없고 재단이 부실하기 때문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청주대 법인은 우리 부의 재산환수지시를 이행치 못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제1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조건을 한정하고 있고, 현 이사진의 경우 재산처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법인이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견해가 상이하 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도 소송패소로 재산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 서원대 법인은 100여억원 이상의 부채현존, 이사장의 출연약속 미이행, 교수 및 학생들의 지나친 학교경영권 간여, 학내구성원간의 신뢰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동 문제가 법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학내구성원간의 신뢰 부족 등에 기인한 바 크므로, 신뢰회복을 통한 학내구성원들의 자율해결이 사후 후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 이며
 - 경원대의 경우는 법인 및 학교의 경영공백상 태의 조속한 해소와 안정적인학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 의)

○장관은 S대(서원대)는 너무 부실해서 임시이사 파견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장관은 재단의 비리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욱 더 부실화시켜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답 변)

- 서원대학은 전이사장 강인호씨가 남겨놓은 부채가 아직까지 100여억원이상 남아 있어, 법인운영에 재산출연의 책임 등이 없는 임시이사로는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 동 법인의 다른 문제들도 법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내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이 곧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 의)

○서원대의 경우에서 처럼 부실하고 부패한 재단의 학원을 인수하면 또 다른 분규를 낳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향후 경원대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견해와 대책은?

(답 변)

- 경원대가 서원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사진 교체전에 등록금에서 유용된 218억원을 예입토록 조치하고, 신입이사진의 학교운영능력을 확인한 후 취임승인할 예정이며
- 이사 10명 중 2명, 감사2명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익인사로 충원토록 지도하여 법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경원대의 경우, 횡령사건은 재단이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행·재정지원 중단조치로 인한 피해는 교수와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사장, 총장, 총무처장 등이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한 승인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교수,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대책입니까?

(답 변)

- 사학 재정비리는 운영자의 위법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생들이 재정지원 중단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견 재정제재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학의 비리에 대하여 이사진 및 경영자 신분상 조치와 아울러 비리의 책임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를 가하여 사학의 정상적 운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재정제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우리 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경고를 통하여 사학들이 건설하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에서도 재정제재가 정상화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경원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이사진등 모든 책임자들이 퇴진하고 투명하고 충실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 구성과 유용된 218억원의 환수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 의)

○경원대의 경우, 검찰의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제재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법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행·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일반적으로 재정비리는 운영자의 위법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생들이 재정지원 중단으로 피해를 입게되므로 일견 재정제계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재정비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 경원대학교는 지난번 현지 실태조사('98.7)시 학교비 218억원 유용, 관할청의 허가없이 임의차입(16억6천만원)사용, 차입금의 목적외 사용(24억6천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계속 한다면, 비리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중으로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지조사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 행·재정제재를 받는 대학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잘하는 대학이건 못하는 대학이건 차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율이란 미명아래 법질서는 파괴되고 비리의 온상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케하여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 정부는 건전한 대학의 행·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비리를 발생시킨 대학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재정제계를 하여 대학의 운영이 건실하고 투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사립대학에도 국립대학과 같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일부 사학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대학관계자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이사장이 직위를 남용하는 등의 사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국립대학의 교수협의회는 비법정 자율단체로 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학교의 장의 예산집행권을 보장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10명 이상의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사학의 예·결산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향후 각 사학들이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재정적 비리를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전국의 많은 사립대학 중에서 경원대와 같이 등록금 횡령과 같은 비리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 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의 자율성을 갖고 학문을 탐구·교육해야 하고,
- 극소수 문제대학 때문에 모든 사립대학을 엄격히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등록금 압류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금 압류 방지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고,
- 사립학교법에 의거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의 집행권을 가진 총·학장의 책임있는 자금관리를 촉구하며
-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학 외부감사제 실시의 강화 및 내부감사의 실질적 감사기능 보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경원학원 사건의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사학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서원대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재정능력이 없는 최완배 이사장이 2백억

가까운 부채를 지닌 서원대를 인수하여 이사장 승인을 받은 사실

-이사장, 이사 취임승인, 기채승인 등 현 이사장에게 해줄 것은 다해주면서 서원대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사실

(답 변)

- 최완배 이사장은 서원학원의 학내구성원 대표(중·고교대표 5명, 평교협회장 등 5명, 직원노조위원장 등 3명, 총 학생회장 등 3명)로 연합구성된 “경영자영입대책추진위원회”에서 '96.4.27 인수자로 선정되어 법인에 추천되고
- 동 법인이사회는 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의 선정결과와 각급 학교장의 경영자선정보고서를 수용하여 '96.4.30 이사회에서 동인 등을 정이사로 선정하여 '96.5.7 교육부에 임원취·해임승인 신청하였으며
- 우리 부에서는 동 이사회와 학내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최완배씨 등을 동 법인의 정이사로 취임승인하였으며
- 동 법인의 문제내용 또한 100여억원 이상의 부채현존, 이사장의 출연약속 미이행, 교수 및 학생들의 지나친 학교경영권 간여, 학내구성원간의 신뢰 부족 등으로 법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 학내구성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자율해결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리의혹이 제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질 의)

○서원대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빚더미 위에서 그나마 남은 학교재산을 담보로 잡혀 빚을 더 얻겠다고 신청한 것을 승인한 사실

(답 변)

□기채허가와 관련하여 우선, 기채허가 경위, 기채허가 사유, 기채허가 변경허가 내용 및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허가 경위

- 최완배 이사장 취임('97.6)후 자체적인 실사결과, 부채규모는 248억원(원금 175억원, 이자73억원)으로 이는 교육부 허가금액 31억원, 세금등 미허가 217억원입니다.
- ※허가를 받은 기채(이자포함) : 3,119백만원 (충북은행 1,694백만원, 충북투금 1,425백

만원)

- '97.3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고자 신청한 기채허가(60억원)에 대하여 이사장출연실적 저조 및 재산출연계획 이행촉구를 요청하면서 반려조치('97.4.7)하였습니다.
- '97.9월 시설자금(10억원) 및 운영자금(부채상환 50억원)에 사용하고자 60억원을 기채하고, 상환재원은 이사장 출연금, 그리고 무담보 신용대출 하기로 신청한 기채허가에 대하여 허가조치('97.9.29)하였습니다

◇기채허가 사유

-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상환재원이 이사장 출연금이어서 이는 결과적으로 부채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들의 학생등록금 압류를 다소라도 진정시킬수 있고, 이사장 출연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채허가 행위는 기속재량행위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대로 허가하여 주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 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대로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 기채총액은 3,669,700천원이고, 상환액은 3,169,700천원(이사장 출연)으로 '98.10.31 현재 잔액은 5억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후 기채상환액을 60억원에서 37억원으로 변경허가하여 법인과 은행에 통보함('98.6.15)

◇기채허가 변경 내용 및 사유

- '97.11. 4 : 기채허가 사항 변경신청 (1차)
 -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40억원 : 한일은행→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정기예금 등) 담보 제공
 -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압류가 예상되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97.11.14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1차)
- '98. 1.23 :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신청 (2차)
 - 변경내용 : 기채처 일부 변경(60억원 전부주택은행) 및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담보 추가 제공
 - 변경사유 : 법인의 부채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법인의 재산공개명시판결을 받아 경매조치를 할 움직임이

있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학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98. 2. 4: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 (2차)

◇기채허가 사항중 일부변경 허가사유

○법인의 부채와 관련, 기채처(주택은행)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담보코자 하므로 채권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이 압류되는 상황을 감안, 학교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변경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처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부채와 관련한 채권자들은 동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 등 불가(후순위)

□앞으로는 기채허가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서원학원과 같은 기채로 인한 물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기채도 가급적 기한에 관계없이 조속히 상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질 의)

○서원대학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등록금 압류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자 현지조사를 하여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답 변)

○서원대의 문제를 제기한 평교협측에서는 시종일관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우리 부의 현지조사('98.5.20부터 29일까지)시 지적사항을 근거로 이사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법인측에서는 업무방해 및 학내소요 주동을 이유로 파면 및 해임조치를 취하는 등 양측간에는 타협 보다는 자기 주장 관철을 위한 극한적 대립양태로 상호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어 이해와 협력의 모색이 쉽지 아니합니다.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이사장 퇴진 등 평교협이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경고」 또는 「임원승인 취소」 두가지 방법뿐이어서 어느쪽을 선택하든 평교협측과 대학측의 기대가 상반되어 상호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어 현 시점에서의 조치는 학원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원대의 사태에 대하여는 '92년도 임시이사 체

제이후 동 대학의 문제해결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타율보다는 구성원간의 대립·갈등을 씻고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역량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질 의)

○안기부 조정관이 가천재단의 경원학원 인수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기부의 고유한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부의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학교법인의 이사진교체에 대한 승인여부는 우리 부의 고유업무로 안기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닙니다.

(질 의)

○경원대 문제에 청와대 모비서관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답 변)

○경원대학의 문제는 경원학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심의·결정할 문제이므로 청와대 비서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청와대 비서관의 압력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李源馥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등록금 횡령, 학교공금횡령행위를 한 최원영·강인호 등 사학비리자들에 대한 중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등록금을 횡령한 최원영과 학교에 부채를 발생케 한 강인호씨를 교육부가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 변)

○학교법인 경원학원 등록금 유용 사건으로 최원영씨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원학원 강인호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92년 사고 발생 당시 교육부에서 학교법인을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로 교체하는 등 교육부

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